
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
증권회사 NCR제도 개선 방안

2014. 4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

목 차



I. 추진배경	1
II. NCR 제도현황 및 문제점	2
III. 개선 방안	7
1. 산출체계 개편	8
2. 연결회계기준NCR 도입	11
3. NCR 구성요소산정 합리화	13
IV. 향후 추진 일정	19

I 추진배경

□ '97.4월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(NCR) 제도는 그동안 금융투자 회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지표로 기능

* 日금융청의 증권사 자기자본규제를 차용·도입한 이후 기본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상품 출현 등을 반영하여 위험값 및 차감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8차례 개선

○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, 거래소 회원 자격,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증권회사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

□ 그러나 現 NCR제도는 그동안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

○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규율하는데 중점을 두어 PI투자, 인수금융 등의 IB업무와 해외진출 등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

○ ELS·DLS 발행 증가* 등으로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손실흡수 능력을 표시하기 어려운 한계

* ELS·DLS 잔액 추이(조원) : ('09) 19.6 → ('11) 33.5 → ('12) 48.5 → ('13) 61

□ 특히, 최근 증권업계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*에서, 투자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**하는 측면에 대한 비판 증가

* 증권사 ROE추이 : (FY'10) 7.7 → (FY'11) 5.6 → (FY'12) 3.0 → (FY'13) △0.5

** '13말 기준 자본잠식 9개 증권사의 평균 NCR은 844%로 여타 증권사 평균 475%보다 크게 높은 수준

➔ 증권사 NCR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

II NCR 제도 현황 및 문제점

1 NCR 산출방식

□ (개념) 단기간내 동원할 수 있는 영업용순자본이 손실발생 가능금액에 해당하는 총위험액을 상회해야 함

* IOSCO 원칙 :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(self-liquidation)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 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채권자와 고객을 보호

□ (산출방법) 총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의 규모를 비율로 표시

$$\begin{aligned} \text{※ 영업용순자본비율(\%)} &= \frac{\text{영업용순자본}}{\text{총위험액}} \times 100 \\ &= \frac{\text{자기자본} - \text{차감항목} + \text{가산항목}}{\text{시장위험액} + \text{신용위험액} + \text{운영위험액}} \times 100 \end{aligned}$$

영업용순자본비율 구성요소

<p>영업용순자본 : 자기자본에서 단기유동화가 곤란한 자산 등을 차감하고 보완자본성격의 부채를 가산</p>	
자기자본	재무제표상 자기자본(자산총액 - 부채총액)
(-) 차감항목	자산 중 즉시 현금화 곤란 자산 * (예) 부동산, 자회사 지분, 만기 3개월이상 대출 등
(+) 가산항목	실질적 상환의무가 없는 보완자본 * (예) 후순위채권, 상환우선주, 대손충당금 등
<p>총 위험액 : 시장·신용·운영위험액의 합계</p>	
시장위험액	주식, 채권, 외환, 펀드, 일반상품, 옵션 등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위험값을 이용하여 계량화 * 예) A주식(2,000원)의 보유시 위험액 : 일반위험액(2,000원 × 8%) + 개별위험액(2,000원 × 4%) = 240
(+) 신용위험액	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위험값을 이용하여 계량화 * 예) A급회사 채무보증(100억원)의 위험액 : 100억원 × 1.6%(위험값) = 1.6억원
(+) 운영위험액	회사가 영업여건 악화로 입을 수 있는 손실 가능성 계량화 * 최근3년간 영업 부문별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여 산정(BIS와 동일)

2

NCR 현황('13년말기준)

- (평균) '13.12말 기준 60개 증권회사 평균 NCR은 479%로 감독 당국의 지도 기준 비율 150% 대비 높은 수준
- (규모별) 소형사의 NCR 평균(614%)이 대형사(476%) 및 중형사(459%)에 비해 138%p 이상 높은 수준
 - 이는 중·대형사들이 소형사에 비해 PI 투자 등 위험인수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데 기인
- (자본잠식 여부) 자본잠식 상태인 9개사의 평균 NCR(844%)이 비잠식 회사(475%) 보다 높음

<NCR 현황 ('13.12월말 기준)>

(단위: 억원, %, 사)

구 분		자기자본	영업용순자본	총위험액	NCR	회사수
규모별*	대형사	244,070	173,375	36,444	476	9
	중형사	133,341	105,483	22,794	459	24
	소형사	30,235	24,983	4,168	614	27
자본잠식	잠식	6,449	5,863	695	844	9
	非잠식	401,197	297,978	62,711	475	51
합 계		407,646	303,841	63,406	479	60

* 자기자본 기준 대형(1조원이상), 중형(3천억원이상), 소형(3천억원미만)

- ◇ (산출체계 측면) 현행 NCR은 순자본규모와 무관한 비율산출 등으로 재무건전성 또는 손실흡수능력 지표로서의 효과성 미흡
- ◇ (구성요소산정 측면) 과도한 순자본 차감으로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일부 자산에 대한 위험값 적용이 불합리

가. 산출체계 측면

(1) 증권회사 건전성에 대한 시장오해 유발

- 現 NCR산출 방식으로는 증권회사의 부채상환 능력 또는 손실 흡수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
 - 그럼에도 NCR이 높을수록 손실흡수능력(재무건전성)이 높다는 시장 평가 관행이 형성되어 오해 유발 가능

(시장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예시)

구 분	영업용순자본	총위험액	NCR	유휴자본규모 (손실흡수능력)
A社	300억원	100억원	300%	200억원
B社	3조원	2조원	150%	1조원

* NCR은 A증권회사가 더 높으나, 위험흡수능력은 B증권회사가 더 우수

- 이에 따라, 자본시장법 제정시 유휴자본규모(영업용순자본-총위험액)를 공시토록 하였으나, NCR 대체 지표로 자리잡지 못함
 - 이는 NCR이 이미 시장의 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고착화 된 점,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되는 점 등에 기인
 - * 미국의 경우 잉여자본규모를 금액기준으로 공표하고 동 지표로 증권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관행이 정착

(2) 영업활동 제약 소지

- 現 NCR 산출체계는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되어 증권회사에 필요 이상의 유휴자본을 강요하는 구조
 - 증권회사는 항상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현재 수준의 NCR 유지가 가능
 - * (예) 영업과정에서 위험액이 1억원 증가될 경우 NCR 479%(업계평균)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5억원 증자해야 함

- 시장 및 투자규모 등에 따라 NCR 격차가 커 리스크 관리에 애로
 - * '10말~'13말 산업평균 NCR 저점(480%)과 고점(605%) 격차는 125%p로 은행BIS비율 격차(0.8%p)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

- 이에 따라 우량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투자·영업확장시 NCR 유지를 위한 고금리 후순위채(5~8%) 발행이 관행화
 - * 증권회사 가용자본이 13.9조원 수준임에도 매년 5천억원~7천억원 수준의 후순위채 발행('10년~'13년)
 - 증권사의 수익성이 높지 않음에도 NCR 유지를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불필요한 유휴자본을 확보하는 비효율 상존

(3) 불합리한 자회사 위험반영

- 現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어 자회사의 위험 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자산·부채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함
 - 해외진출 또는 M&A 과정에서 인수한 자회사 출자지분을 전액 차감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해외진출 및 M&A를 제약

나. 구성요소산정 측면

(1) 과도한 기업신용공여액 차감

- '13.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형 IB에 기업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되었으나, 현 NCR체계하에서는 활발한 영업 곤란
 - 3개월이상 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되어 자본법상 대출한도(자기자본의 100%)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부과

(2) 청산시 현금화 가능자산 등 과도한 유동성 규제

- 1년초과 예금, 펀드에 편입된 대출채권 등 청산시 유동성 확보 가능한 자산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등 유동성 요구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측면

(3) BIS 대비 불합리한 위험값 적용 등

- 사모사채, 투자목적 주식 등 일부 자산에 대해 BIS 대비 높은 시장위험값 적용
-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동일함에도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등 위험액 산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일부 문제점 노정
 - * (예) 결제절차와 이행책임자가 동일함에도 위탁매매 미수금은 신용위험 미산정, 자기매매 미수금은 신용위험 산정

(4) 보수적 운영에 따른 업계 부담

- 신용평가등급 적용 방식, 파생상품(대체비용) 포지션 상계요건 등 제도의 보수적 운용에 따른 부담도 상존

Ⅲ 개선 방안

< 기본 방향 >

- ◇ (산출체계 개편) 현행 NCR의 총위험액을 분자로 이관하고 법정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 비율로 변경
- ◇ (연결기준 도입) K-IFRS상 종속기업을 보유한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연결 NCR 도입
- ◇ (구성요소산정 합리화) 영업용순자본 인정범위 확대 및 위험값의 합리적 조정 등

개선 방안	기대 효과
<p>1 NCR 산출체계 개편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p>[현행] 영업용순자본 총위험</p> <p>↓</p> <p>[개편안] 영업용순자본-총위험액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</p> <p><small>*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본의 70%</small></p> </div>	<p>⇒ NCR 변동성 완화 및 재무건전성 지표로서의 실효성 제고</p>
<p>2 연결기준 NCR 제도 도입</p>	<p>⇒ 자회사 리스크관리 강화 및 해외진출, M&A 활성화</p>
<p>3 구성요소 산정 합리화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p>□ 영업용순자본 인정범위 확대</p> <p>+</p> <p>□ 위험값의 합리적 조정</p> <p>+</p> <p>□ 기타 부담 완화</p> </div>	<p>⇒ 규제 완화를 통한 자본활용도 제고</p>

1

산출체계 개편

1] (개요)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변경

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	⇒	영업용순자본 - 총위험액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*
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%

○ 美SEC NCR*을 Benchmark

* 자본+가산항목-차감항목-총위험액 ≥ Max [법정최소자본금, 미수금의 2%]

- i) 자본+가산항목-차감항목은 영업용순자본과 동일
- ii) 금산법에서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자기자본“비율”로 규정하고 있어 금액방식인 美규제를 비율방식으로 전환
- iii) 미수금의 경우 국내에 유사 회계과목을 찾기 어려워 규제집행 곤란

○ 분모에 위험액 관련 항목이 반영될 경우 자본배분 비효율 등 現NCR의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분모에서 총위험액 관련 항목을 배제

2] (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) 변경된 산출구조에 상응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

<적기시정조치 부과 NCR 요건(안)>

(단위: %)

구 분		경영개선		
		권고	요구	명령 ¹⁾
NCR 산출체계	변경 전	150	120	100
	변경 후	100 ²⁾	50	0

1) 영업용순자본 = 총위험액(자본시장법 §30)

2) 영업용순자본 - 총위험액 = 인가 필요 유지 자본

③ (영향분석) 증권업계평균NCR은 유사하나 변동성 감소, 자본 충실도 반영 등 장점 보유

① (업계 평균) '13.12말 기준 현행 NCR 479% → 개편안 NCR 482%로 유사한 수준

② (투자에 따른 변동폭) 개편안의 변동폭이 현행보다 감소

* 각 증권회사가 영업용순자본규모의 50%만큼 비상장회사에 추가로 출자할 경우
NCR 하락 폭 : (현행) $\Delta 175\%p$ → (개선) $\Delta 73\%p$

③ (회사 규모별 비교) 현행 NCR은 대형사 및 중형사에 비해 소형사의 NCR이 높으나, 개선안은 자기자본의 규모가 클수록 NCR이 높게 나타남

증권회사 규모별 평균 NCR

구 분	대형사 평균	중형사 평균	소형사 평균
현행 NCR	476%	459%	614%
개편 NCR	1,140%	318%	181%

* 자기자본 기준 대형(1조원이상), 중형(3천억원이상), 소형(3천억원미만)

④ (자본잠식 반영 여부) 현행 NCR은 자본잠식 회사(844%)가 비잠식 회사(475%)보다 높으나, 개편안은 비잠식 회사(503%)가 자본잠식 회사(167%)보다 높게(+ 336%p) 나타남

④ (시행시기) '15년말까지는 現NCR과 개편NCR 중 회사가 원하는 비율을 활용*하게 하고 '16년부터 모든 회사에 적용

* 보험RBC제도 산출체계 개편시에도 2년('09.4월~'11.3월)간 회사에 선택권 부여

- ⑤ (후속조치) 現NCR을 활용한 규제들은 산출체계 변경에 상응하는 기준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 기관에 기준 변경을 요청

NCR 활용분야 현황

구 분	활용용도	現NCR 요구비율	변경(안)
감독규정	적기시정조치 (지도비율)	150%(경영개선권고), 120%(요구), 100%(명령)	100%(권고), 50%(요구), 0%(명령)
국민연금	거래증권사 선정	250%(만점요건)	조정 요청
우정본부	거래증권사 선정	450%(만점요건)	조정 요청
거래소	회원자격(유지)	180%(150%)	100%
	합성ETF 거래증권사	250%	200%
	CCP IRS 청산업무	250%	200%
기재부	국고채 전문딜러	250%	조정 요청
한국은행	공개시장조작 대상	250%	조정 요청

- ⑥ (기대효과) 투자자 보호 및 증권회사 영업활력 제고에 기여

① (투자자 보호) 증권사의 손실흡수 능력(유휴자본 : 영업용순자본 - 총위험액)이 직접 표시됨에 따라 투자자의 증권사별 건전성 수준 판단 용이

② (자본배분 효율화) 투자로 인한 NCR 하락 규모* 및 NCR비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본 규모** 감소로 인한 위험투자 기피 현상 완화

* 각 증권회사가 영업용순자본규모의 50%만큼 비상장회사에 추가로 출자할 경우 NCR 하락 폭 : (현행) $\Delta 175\%p$ \rightarrow (개선) $\Delta 73\%p$

** 위험액 1억원 증가시 NCR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만 필요

③ (전문화·특화 유도) 중·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인가단위 반납시 NCR이 제고되는 만큼 전문화·특화 유도 가능

2

연결회계기준 NCR 도입

① (개요) 은행 등 연결회계기준 자기자본규제를 도입한 타업권의 사례를 바탕으로 증권회사 NCR의 특수성을 일부 반영

① (연결NCR 적용 대상) K-IFRS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대해 연결 NCR 적용

* 연결회계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기 도입한 은행, 저축은행, 보험의 경우에도 모든 회사에 대해 연결회계기준을 도입

② (연결대상 자회사) K-IFRS상 종속기업인 금융회사는 연결하되, 연결기준이 과도하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종속기업은 연결대상에서 제외

- (非금융회사) 재고자산 등 자산의 성격이 금융회사와 다른 만큼 연결 제외

* 은행, 저축은행, 보험도 非금융 자회사는 연결에서 제외

- (금융회사) 모회사가 포괄적 지급보증*을 하지 않고, 연결손실예상 금액**이 출자금액보다 큰 금융 자회사는 연결 제외

* 자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한 지급보증 약정 등

** 연결손실예상금액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청산시 부담해야할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계상되어 불합리

<연결대상 자회사 범위>

구 분		금융회사		非금융회사
		포괄적지급보증○	포괄적지급보증×	
투자금액-연결 손실예상금액	양수	연결	연결	연결 제외
	음수		연결 제외	

③ (산정방식)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경우 모회사 지분율에 관계 없이 종속회사 전체 자산·부채의 위험값을 반영

* 은행·보험업권에서도 비지배주주지분을 포함하여 자회사 위험값 산정

② (영향분석) 평균적으로 개별NCR보다 연결NCR이 높을 것으로 예상

* 자회사 유형별(금융회사, SPC, 해외현지법인)로 대표성 있는 7개 증권사 대상 Simulation결과, 연결시 NCR이 약 90%p 수준 상승('13.9월 기준)

③ (시행시기)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'16.1분기부터 시행

- (시범운영) 연결 NCR 도입에 따른 충격 완화 및 제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대형사* 대상 일정기간('15.1.1~12.31) 시범 운영**

* '13.12월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9개사

** 보험회사의 경우 '13.6월~'14.12월 중 연결RBC 시범운영 시행 중

- (시행시기) '16.1분기*부터 연결NCR을 증권회사 건전성 관련 주지표로 활용(적기시정조치 기준, 공시 등 업무 전반에 적용)

* 시범운영기간의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행시기 조정여부 검토

④ (기대효과) 증권회사 영업 활성화에 기여

- ① 해외 진출 또는 M&A 영업활동의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증권업계의 영업활력 제고

- ② 자회사의 자산·부채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·반영으로 자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가능

- ◇ 증권업계에서 요청한 NCR 규제 완화 과제 중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사항 수용
- ① (영업용순자본 차감 항목 조정) 기업신용공여, 예치금 등 지나치게 엄격한 순자본 차감 기준을 일부 조정
 - ② (위험값의 합리적 조정) BIS대비 엄격하거나 실제 위험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위험값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완화
 - ③ (기타 부담 완화) 제도의 보수적 운영에 따른 NCR 구성 요소 산정 부담 완화

가. 영업용순자본 차감 항목 조정

(1) 증권사 기업신용공여

- (현행) 3개월 이상 기업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
- (개선)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중 1년 이내 대출, M&A·IPO 관련 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으로 반영하되 대출 성격에 따라 위험값을 차별 적용

① 일반기업 대출(종합금융투자사업자)

- 3개월 이내 : 현행 위험값을 적용하여 위험액에 반영
- 3개월 ~ 1년 이하 : 상향된 위험값*을 적용하여 위험액에 반영

* (예) 현행 위험값에 기간 위험값 가산, PF대출은 보다 높은 위험값 적용

- 1년 초과 :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

② M&A 및 IPO 관련 대출(증권사 전체)

- 금감원에 신용공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승인* 받은 경우 잔존 만기에 관계 없이 **현행 위험값을 적용**하여 위험액에 반영

* IB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시 신용공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검증 받은 만큼 추가 승인 불요

③ 영업용순자본 인정 관련 경과 조치

- 증권사의 신용공여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**단계적***으로 순자본 인정수준 확대

* '14년(80%) → '15년(90%) → '16년 이후(100%)

(2)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·예치금

- (현행) 잔존만기 1년초과 예금 중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등이 불가한 경우 **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**

- (개선) 1년 초과 예금·예치금도 **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**

* 영업활동 계속 중에는 유동성이 없더라도 청산시 예금전액을 확보 가능한 점 감안

(3) 집합투자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

- (현행) 집합투자증권은 기초자산을 분해하여 위험액을 산정함에 따라 대출채권 편입시 **차감항목으로 계상**

- (개선) 대출채권이 편입된 집합투자증권이라 하더라도 **일반적인 펀드와 동일한 유동성이 있는 경우 차감 제외**

나. 위험값의 합리적 조정

(1) 장내 자기매매 미수금

□ (현행)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은 위험값 2% 적용

○ 반면, 장내 위탁매매 관련 미수금(거래일~결제일) 위험값은 0

□ (개선) 자기매매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% 적용

* 장내거래의 경우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결제절차와 이행책임자가 동일한 점 감안

(2) 시장성 없는 주식

□ (현행) 시장성 없는 주식에 대한 위험값(12% or 24%)이 BIS(8% or 12%)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적용

□ (개선) BIS와 유사한 수준으로 위험값을 완화

○ (투자목적·매각제한 주식) 시장성 주식 수준으로 완화

○ (관계기관 출자지분) 공운법상 공공기관(예탁원, 거래소)의 경우 BIS와 동일하게 8%로 적용

< 주식 포지션의 위험값(개별+일반) >

구 분		NCR		BIS
		현행	개선	
시장성 있는 주식	코스피, 해외적격시장 주식	12%(16%*)	12%(16%*)	16%
	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 주식	14%(20%*)	14%(20%*)	
	기타 시장성 주식	20%	20%	
시장성 없는 주식	투자목적·매각제한의 주식	24%	20%	신용위험 산정 (8% or 12%)
	관계기관** 출자지분	12%	8% or 12%	

* 유동성 인정지수(KOSPI 200, KOSTAR 등)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, 보유금액이 분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
**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, 한국증권금융, 한국증권전산, 한국자금중개

(3) 사모사채 등

□ (현행) 사모사채 및 B-미만 등급의 일반채권(8~24%) 위험값을 BIS(12%)에 비해 높게 적용

□ (개선) 사모사채에 대한 별도 위험값 적용을 폐지하고 B-미만 등급의 금리 개별위험값을 BIS 수준(12%)으로 조정

* 유통시장이 있고 매각에 제한이 없는 사모사채의 경우 일반채권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감안

< 금리 관련 포지션의 개별위험값 조정 >

(단위: %)

채권의 구분	신용 등급	잔존만기	현행		개선	BIS
			일반채권	사모사채		
기업등 발행 채권	BBB+ ~ BBB-	6개월 이하	1.0%	1.2%	1.0%	0.25%
		6개월초과 24개월이하	1.6%	2.0%	1.6%	1.0%
		24개월 초과	2.4%	3.0%	2.4%	1.6%
	우량채권 무등급		6.0%	8.0%	6.0%	8.0%
	BB+ ~ B-	6개월 이하	4.0%	6.0%	4.0%	12.0%
		6개월초과 24개월이하	8.0%	12.0%	8.0%	
		24개월 초과	12.0%	18.0%	12.0%	
	B- 미만	6개월 이하	8.0%	12.0%	12.0%	
		6개월초과 24개월이하	16.0%	24.0%	12.0%	
		24개월 초과	24.0%	32.0%	12.0%	

(4) 집합투자증권에 편입된 외환

□ (현행) 집합투자증권에 편입자산 분해가 곤란하고 펀드의 신용 등급이 없는 경우 편입된 외환은 위험값 16%를 적용

※ 이는, 집합투자증권 자산 분해시 외환의 경우 별도 위험값 기준이 없어 기타(16%)로 적용되는데 기인

○ 반면, 외환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위험값은 8%

□ (개선) 집합투자증권에 편입된 외환도 위험값 8% 적용

* 외환 위험값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(8%)와 다르게 적용할 실익이 없는 점 감안

(5) 주택금융공사 MBS

□ (현행) 주택금융공사 MBS는 금리 개별위험값(1.6%적용) 적용

○ 반면, 정부 또는 정부 결손보전 공공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일반채권은 개별위험값 0% 적용 중

□ (개선) 주택금융공사 MBS도 개별위험값 0% 적용

* 주택금융공사 MBS의 경우 은행에서도 위험값 0%를 적용 중인 점 감안

(6) 파생결합사채

□ (현행) 자본시장법 개정('13.8.29. 시행)으로 파생결합증권 중 원금 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이 파생결합사채로 분류 변경되어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위험액 산정 규정이 없는 상태

□ (개선) 파생결합사채도 본질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이므로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액 산정

다. NCR 산출 관련 부담 완화

(1) 신용평가등급 적용 방식 완화

- (현행) 신용평가등급이 복수인 경우 낮은 등급을 적용토록 하여 등급이 3개인 경우 가장 보수적인 등급 적용
 - 반면, 은행은 위험가중치(신용등급)가 세 개 이상인 경우 중간값인 위험가중치를 적용
- (개선) 은행에 비해 특별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실익이 적은 만큼 은행과 동일하게 3개 등급 중 중간값 적용

(2) 파생상품 포지션 상계 요건 완화

- (현행) 파생상품(대체비용) 상계*를 위해서는 상계계약 유효성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매년 1회 갱신이 필요하여 비용 부담 가중
 - * 파생상품 포지션 상계시 위험액에 반영되지 않음
- (개선) 거래상대방 국가의 법령 및 규정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법률 의견서를 갱신토록 부담 완화

(3) M&A대출관련 신용위험액 산정시점 합리화

- 현행 투자확약서 제출시점부터 산정되던 M&A대출관련 위험액 산정시점을 M&A주관사와 계약체결 시점으로 변경
 - * 계약체결 전의 투자확약서 제출은 일방의 의사이며, 실제 대출은 계약체결후 발생

라. 운영위험 산정 기준 조정

- 회사별 영업이익의 일정비율로 계산되는 운영위험액의 산정 기준을 BIS비율 산정기준과 일치
 - * (현행) 판관비 차감 후 영업이익 → (개선) 판관비 차감 전 영업이익

마. 시행시기 :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즉시

※ 다만, 운영위험 산정기준은 NCR 산출체계 변경시부터 적용

IV 향후 추진 일정

< 기본 방향 >

- 산출체계 변경, 연결기준 도입 등 산출구조 변경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후 최종 확정
-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축소 등 규제 완화는 제도 변경 후 즉시 시행

- 1 NCR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(자본연 주관, '14.4월중)
- 2 감독 규정, 세칙 등 관련 규정 변경예고('14.4월말)
 - 규개위 등을 거쳐 감독규정·세칙·해설서 개정('14.3/4분기)
- 3 新 산출체계 선택 시행 및 연결기준 NCR 시범실시('15년)
- 4 新 산출체계 및 연결기준 NCR 전면 시행('16년)

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일정안

세부 추진 단계	'14년					'15년	'16년
	3월	4월	5월	6월	하반기		
1 공청회 실시							
2 규정 및 세칙 변경예고							
3 규제 완화 사항 시행							
4 해설서 개정							
5 新 산출체계 선택 시행							
6 연결기준 NCR 시범운영							
7 新 산출체계 및 연결 NCR 시행							